

의안번호	제 87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0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876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단순 인용 조항 변경
 -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5건
 - * 「지방자치법」 각 인용 조항 변경,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연령 변경(19세 →18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66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
다.

제11조(「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2조(「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5
조부터 제129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28조”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28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법 제116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제13조(「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을 “같은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15조(「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6조(「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7조(「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9조(「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0조(「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1조(「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개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한다.

제24조(「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다

제25(「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18세 ----- -----.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p> <p>가.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p> <p>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p> <p>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지방자치법」 제70조----- ----- -----</p> <p>다. (현행과 같음)</p> <p>2. · 3. (현행과 같음)</p>
---	--

3.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p>	<p>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3. ---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p>

4.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p>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p> <p>-----</p> <p>-----</p> <p>-----</p> <p>-----</p>

5.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8. “기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8. -----</p> <p>-----</p> <p>-----</p> <p>「지방자치법」 제159조-----</p> <p>-----</p> <p>-----.</p>

6.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 ----- ----- -----.

7.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중략)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중략)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 ----- -----

8.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 ----- ----- ----- -----

<p>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북도 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 -----.</p>
--	---

9.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6조----- ----- ----- -----.</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5명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⑤ (생략)</p>	<p>제3조(구성)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 -----.</p> <p>④·⑤ (생략)</p>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2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29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3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3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

제22조(설치) ① 법 제12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설치) ① 법 제12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설치) ① 법 제12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설치) ① 법 제127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설치) ① 법 제127조 -----

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4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 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잡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4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5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설치) ① 법 제12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설치) ① 법 제12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설치) ① 법 제12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

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내수면산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서울세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57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③ (생략)

제60조(설치)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③ (생략)

제63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설치) ① 법 제128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설치) ① 법 제128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p>의 설치) ① <u>법 제116조</u>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③ (생략)</p>	<p>의 설치) ① <u>법 제129조</u> ----- ----- ----- -----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13.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전체를 말한다.</p> <p>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 또는 같은 법 <u>제4조의2제4항</u>에 따른 행정동·리</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 ----- ----- <u>제7</u> <u>조제4항</u>-----</p>

14.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③ 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 ----- 「지방자치법」 <u>제154조</u> ----- -----.

1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 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 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 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u>제159조</u> ----- -----.

16. 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 방자치법」 제144조 및 「치매관리 법」 제16조의3에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u>제161조</u> ----- -----.

<p>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 -----.</p>
---	---

17.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에 따라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 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159조----- ----- ----- ----- ----- -----.</p>

1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 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 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 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 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 탁)----- 「지방자치법」 제117 조----- ----- ----- ----- -----.</p>

19.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20.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41조----- ----- ----- ----- -----.

21.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p>

22.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45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5조(예산) ①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17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 ----- ----- -----.
---	---

2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28조----- ----- ----- -----.

24.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6조----- ----- -----

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25.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3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충 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 법」 제156조----- ----- ----- -----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 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